

<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>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<p align="center">제 17 조 (투자대상자산 등)</p>	<p>① (본문 생략) 1~7. (생략) 8.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 9~12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① (본문 현행과 동일) 1~7. (현행과 동일) 8.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<u>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.</u> 이하 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 9~12.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</p>
<p align="center">제 18 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)</p>	<p>(본문 생략) 1~6. (생략) 7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% 이하</u>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%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(생략) 나.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 이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(이하 "외국자산" 이라 한다)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 8~10. (생략)</p>	<p>(본문 현행과 동일) 1~6. (현행과 동일) 7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20% 이하</u>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<u>20%</u>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(현행과 동일) <u>나. (삭제)</u> 8~10. (현행과 동일)</p>
<p align="center">부 칙 (시행일)</p>	<p align="center">(신 설)</p>	<p>이 신탁계약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>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가. 투자 대상</p> <p>투자대상 종류</p> <p>8. 집합투자증권등</p>	<p>투자비율 : 5% 이하</p> <p>투자대상 세부설명 :</p> <p>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이하 “집합투자증권 등”이라 한다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까지, 자산총액의 95%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	<p>투자비율 : 20% 이하</p> <p>투자대상 세부설명 :</p> <p>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<u>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.</u> 이하“집합투자증권등”이라 한다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